

제1장 사생활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사례 1

의결번호	제2015-12호
매 체 명	e머니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월 17일자 국제면
기사제목	美 필라델피아서 한인 추정 대학 신입생 추락사

1. 보도내용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 김 양(18)이 15일(현지시간) 시내 중심가의 건물 8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략) 김 씨는 뉴저지에서 자랐으며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필라델피아 ○○대학 ○○○○대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망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공익과 무관한 사인의 사생활, 성명과 나이, 학력사항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15-72호
매 체 명	경남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11일자 사람16면
기사제목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

1. 보도내용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 제하의 사진
 「(전략) 이날 욕지도 ○○○도 거주 박모(79) 씨는 하반신 마비증상과 팔 저림 증상이 심해져 배우자 한모 씨가 119로 신고해 통영해경상황센터로 접수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이송되고 있는 응급환자의 초상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면서 성과 나이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이송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통영시 욕지면 상노대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이날 욕지도 ~~상노대도~~ 상노대도 거주 박모(79)씨는 하반신 마비증상과 팔 저림 증상이 심해져 배우자 한모씨가 119로 신고해 통영해경상황센터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한 통영해경은 주변해역을 경비중이던 50t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함정내 설치된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이용해 부산대학병원과 실시간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15-191호
매 체 명	더팩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2일자 경제면
기사제목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1. 보도내용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병실에 누워있는 특정 기업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그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외부접근이 차단된 병실에서 투병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크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입력: 2015.06.02 10:00 / 수정: 2015.06.02 10:48



'글로벌 삼성'의 총수 이건의 삼성전자 회장이 '자발 호흡'을 하면서 견재한 신체 상태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입원 1년 여 만인 지난달 22일 일행들 삼성서울병원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카메라에 처음으로 잡혔다. /이호근 기자

글로벌 삼성의 총수 이건의(73) 삼성전자 회장이 '자발 호흡'을 하면서 견재한 신체 상태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이 회장 투병 생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신개념 대중증합지 <더팩트>는 최근 이건의 회장이 평온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 VIP 병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과 그룹 수뇌부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장면 등을 단독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더팩트>는 이 회장 건강 상태를 둘러싼 세간의 억측이나 악성 루머 등이 삼성은 물론 나라 경제 차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판단, <더팩트> 카메라에 잡힌 이 회장의 근황을 보도한다.<편집자 주>

'사망설'은 헛소문에 불과했다. 지난 1년 여 동안 삼성 이건의 회장의 건강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10일 급성 심근 경색을 일으킨 이건의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증권이 지라시(정보지)와 일부 매체에 의해 '사망설'의 대상으로 거론돼 파장을 낳았으나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달 22일 확인한 결과, 인공호흡기나 외부 의료 장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견재한 모습으로 병상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일상적으로 병실의 이 회장을 찾아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도 확인됐으며, 병상에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시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확인됐다. 이건의 회장이 삼성 이승업의 훈련에 반응을 보였다는 삼성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이로써 사실에 무게를 둘 수 있게 됐다. 삼성 측 한 관계자는 이 회장 시선에 따라 TV 위치를 이동 조절한다고 밝혔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15-222호
매 체 명	매일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16일자 종합1면
기사제목	○○청 공무원 1차 양성...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1. 보도내용

「○○청 공무원 1차 양성...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제하의 도표 및 보도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의 성, 나이, 근무지, 담당 업무 외에 가족들의 직업 및 나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